

 주식회사 오래식품	선행요건 관리기준서		표준번호	OR-SM-0201
			제정일자	2014-06-02
	위생 관리		개정일자	2023-12-29
			개정번호	Rev. 2

- (가) 공정이나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된 장소에서만 실시한다.
- (나) 살충제 등 약제는 사용방법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.
- (다) 식품에 직접 접촉하거나 접촉할 우려가 있는 제조시설에는 비닐덮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실시한다.
- (라) 구제작업 종료 후 제조시설 또는 바닥/벽/천장 등 직, 간접적으로 접촉한부분은 세척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.

보행해충 업체점검

10) 방충·방서 관리계획 [동절기(11월~3월)/하절기(4월~10월)]

관리기준	구분		비래해충 동절기	비래해충 하절기	보행해충 동절기	보행해충 하절기	설치류 (동/하절기)	개선조치사항
	1단계	청결	2~7	5~10	1~3	2~5	0	
	일반	2~10	5~15	1~5	2~7	0		
2단계	청결	8~15	11~20	4~6	6~8	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 출입문 상/하, 좌/우 틈새 밀폐 확인 · 창문 밀폐 및 창문 배수구명 밀폐확인 · 문 열고 작업 중이었던지 확인 · 방충/방서 설비 점검 	
	일반	11~20	16~25	6~8	8~12	0		
3단계	청결	16 이상	21 이상	7이상	9이상	1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각 출입문 상/하, 좌/우 틈새 밀폐 확인 · 창문 밀폐 및 창문 배수구명 밀폐확인 · 문 열고 작업 중이었던지 확인 · 방충/방서 설비 점검 	
	일반	21 이상	26 이상	9이상	13이상			
단독개채수 증가	청결	13 이상	18 이상	6이상	7이상	1 이상		
	일반	18 이상	23 이상	10이상	11이상			

(2) 점검방법 및 주기

1) 방제업체 점검방법

- ① 품질관리팀 담당자는 **1회/월 이상** 방제전문업체에서 방제작업을 실시 할 때 **방충·방서 관리기준(OR-SP-0205)**에 따라 방제작업을 입회하여 실시한다.
- ② 방제전문업체에서는 방제작업을 실시한 후 방역결과점검표를 품질관리담당자에게 제출 하고 담당자는 방제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**방충방서모니터링점검표 (방역테크)(OR-SI-0204)**를 확인하고 HACCP 팀장에게 보고 한다.
- ③ 방제전문업체는 1회/월 이상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내용을 근거한 방제계획을 수립 방제작업을 실시한다.

2) 설치류 자체 점검방법

- ① 쥐약을 쥐먹이상자(트랩)이용 서식지 근처에 놓고 1주일 이상 방치 포획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 및 **자체 방충·방서모니터링점검표(OR-SI-0202~3)**에 기록 한다.
- ② 작업장에는 쥐끈끈이를 전용트랩에 끼워 적정위치(쥐의 이동 동선)에 트랩을 약 1주일 방치하여 포획하고 자체 방충·방서모니터링점검표(OR-SI-0202~3)에 기록 한다.

3) 비래해충 자체 점검방법 (보행해충트랩은 업체 별도 점검)

- ① 작업장에는 비래해충전용 포충등을 상단 중앙부위에 각 작업장별 적정위치에 부착하여 비래해충을 포획하여 제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자체 방충·방서모니터링점검표(OR-SI-0202~3)에 기록한다.